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각 법률 이행을 화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원 중이나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이행 기관이 분리되어 효율적 업무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 중인 화학물질 관리 관련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제1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

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의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단서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위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호 중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제1항”을 “법 제2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0조, 제25조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따른 유독물질,”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2.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3.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해당 화학물질이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

제46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을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유해성 및 위해성”을 “유해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2. 위해성에 관한 결과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표 3 제6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표 7 제6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및 제3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4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5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3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제2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표 2의 제3호의 가목 중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를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중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협회”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협회”로 한다.

별지 제80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협회”를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협회”로 한다.

제3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
까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
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
분, 같은 항 제5호다목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
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환경과학
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국
립환경과학원의”를 “화학물질안전원의”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립환경과
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
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안전원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

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신고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4 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고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의5 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

화학물질안전원장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

④ 화학물질안전원장

정·보완통지서에 따라 신고인
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수
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
·보완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①·② (생략)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
라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
립환경과학원장에 의한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등
의 방법으로 법 제11조제1항제3
호 및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등
면제확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
지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국
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⑤ -----

----- 화학물질안전
원장-----.

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화
학물질안전원장-----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
지 등) ① -----
----- 화
학물질안전원장-----
-----.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및 그 변경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생략)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1. · 2. (현행과 같음)

② -----
화학물질안전원장-----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

----- 화학물질안전원장-----.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화학물질안전원장-----

1. ~ 3. (현행과 같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 ① (생략)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생략)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출받은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① (생략)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 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

----- 화학
물질안전원장-----
--.

1. ~ 4. (현행과 같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와 시험자료의 제출기한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험계획서가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시험자료의 제출기한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험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기한까지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현장 확인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신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화학물질
안전원장-----
----- 화학물질
안전원장-----

-----.

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① -----

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개별제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별제출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과의 면담 또는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

----- 화학물질안전원장-----

② -----

----- 화학물질안전원장-----

1. ~ 4. (현행과 같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화학물질안전원장-----

게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문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제출한 자의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①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

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① -----

----- 화학
물질안전원장-----

1. 2. (현행과 같음)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① -----

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소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을 통지한 날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을 통지한 날부터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이하 “유해성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

----- 화학물질안전원장
-----.

1. ~ 3. (현행과 같음)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

----- 화
학물질안전원장-----
-----.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화학물질안전원장-----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⑤ (생략)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신규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과통보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유해성심사 결과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

② -----

----- 화학
물질안전원장-----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

-----.

따른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성평가를 시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② (생략)

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단서 신설>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화학물질안전원장-----

----. 다만,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위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화학물질 안전원장-----

-.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 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3.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

<신설>

<신설>

-----.

1. (현행과 같음)

<삭제>

2. ----- 유독물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 성심사 결과의 통지

2.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의 지정·고시

3.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 사 결과의 공개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2. 법 제20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3.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4. (생략)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

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해당 화학물질이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

④ 제3항-----

----- 제3항-----
-----.

1. 법 제24조제1항-----

2. 법 제25조제1항 -----
----- 따른 -----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생략)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

----- 화
학물질안전원장-----

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화학물질안전원장 -----
-----.

1. 2. (현행과 같음)

③ -----
----- 화학물질안
전원장 -----

-----.

④ ----- 화학물

경과학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 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 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5. (생략)
6.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결과
7. (생략)

<신설>

질안전원장 -----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1. ~ 3. (현행과 같음)

4. 유독물질 -----

5. (현행과 같음)

6. 유해성-----

7. (현행과 같음)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수입량의 범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52조(출입·검사)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2. 위해성에 관한 결과

③ -----

제52조(출입·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

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④ (생략)

제55조의2(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 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자료 보호 해지 요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보호의 해지 요청에 따른 결과를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자료 보호 해지 결과통지서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① -----

----- 화학물질안전원장-----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u>국립환경과학원장</u>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화학물질 안전원장</u>-----.</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⑤ (생략)</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국립환경과학원장</u>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u>화학물질안전원장</u> ----- -----.</p>
<p>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 ⑦ (생략)</p> <p>⑧ <u>국립환경과학원장</u>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p> <p>⑨ <u>국립환경과학원장</u>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p>	<p>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u>화학물질안전원장</u>----- ----- ----- ----- ----- ----- -----.</p> <p>⑨ <u>화학물질안전원장</u>----- ----- ----- ----- ----- -----.</p>

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⑪ · ⑫ (생략)

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생략)

⑩ 화학물질안전원장-----

⑪ · ⑫ (현행과 같음)

⑬ 화학물질안전원장-----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② (현행과 같음)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1. 2. (생략)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

⑥ 물질승인신청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

④ 화학물질안전원장-----

-----.

1. 2. (현행과 같음)

⑤ 화학물질안전원장-----

-----.

⑥ -----

----- 화학
물질안전원장-----

-----.

⑦ 화학물질안전원장-----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

⑧ 화학물질안전원장-----

-----.

⑨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① -----

----- 화학물질안전원장-----.

1. 2. (현행과 같음)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② (생략)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서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

-----.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① (생략)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③ (생략)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

-----.

⑤ -----

-----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화학물질안전원장-----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

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⑥ (생략)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 제출 확인 등)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

출 등) ① -----

----- 화
학물질안전원장-----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 제출 확인 등) ① -----

----- 화학물질
안전원장-----.

1. ~ 3. (현행과 같음)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

② (생략)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자료(이하 “제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제품승인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신청자가 물질승인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

② (현행과 같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

-----.

⑤ 화학물질안전원장-----

-----.

는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2. (생략)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 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

⑦ 제품승인신청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

-----.

1. 2. (현행과 같음)

⑥ 화학물질안전원장-----

-----.

⑦ -----

----- 화학
물질안전원장-----

-----.

⑧ 화학물질안전원장-----

게 통지해야 한다.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⑪ 제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

⑨ 화학물질안전원장-----

-----.

⑩ 화학물질안전원장-----

-----.

⑪ -----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 -----

----- 화학물질안전원장-----.

1. 2. (현행과 같음)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① (생략)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에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생략)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화학물질안전원장-----.

③ (현행과 같음)

④ 화학물질안전원장-----

-----.

⑤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 4. (생략)
- 5.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나. (생략)

다.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한시적인 승인 면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② (생략)

--.

⑥ -----

----- 화학물질안전원장 -----

--.

- 1. ~ 4. (현행과 같음)
- 5.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화학물질안전원장 -----

⑦ 화학물질안전원장 -----

--.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에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 함께 통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40조(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 화학
물질안전원장-----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

-----.

④ -----

--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40조(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

1.·2. (생략)

② (생략)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생략)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은 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

-----.

④ -----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47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

-----.

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해당 제품 및 살생물제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생략)

②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선임된 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략)

③ (생략)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화학물질안전원장-----.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화학물질안전원장-----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